



국정감사질의서

피감기관 : 경찰청

10월18일(월)

국회의원 이영순

• 국가보안법의 악법성

공안문제연구소는 281건을 감정의뢰받아 66건을 찬양동조로, 35건을 반정부, 20건을 용공, 10건을 좌익으로, 9건을 선전전동으로 감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헌과 당규약을 찬양동조로,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자료집을 찬양동조, 서울시지부 등 각 지구당의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찬양동조, 대구시지부 후보등록결과를 찬양동조로 감정하였습니다.

2002년 당대회자료집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고 북한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는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부패방지법, 이자제한법 제정을 주장했다고 용공 표현물이라고 감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좌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지>케 한다는 이유로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는 등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이 북한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친북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철폐가 북한의 노선을 선전하는 친북용공행위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용공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체제로 이득을 누려온 집단

이 얼마나 편집증적이며 비이성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 개요

경찰청 상의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군남동지회, 천안시노년회, 공안문제연구소 등 민주노동당에 대해 사찰,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총연맹 시절인 1998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281건을 사찰 한 공안기관으로부터 감정의 폭발이 140건을 전양동조, 만성우, 용궁, 화익, 선전선물 등으로 간첩 혐의로서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어매려는 데 적극 동조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등 공안기관들은 4.15총선이후에도 11건에 이르는 당의 공식자료 등을 감청하여 원내정당이 된 후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과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 공안기구의 불법적인 사찰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 수사는 검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에서도 자행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민주노동당의 창당 추진에 대해 감청대상하여 설치사실을 계속하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12건의 감청의뢰를 한 것은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이 계속하고 있으며 원내정당에 대한 사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 수사

• 개요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결과서에 의하면 공안기관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사찰,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시절인 1998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281건을 경찰 등 공안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받아 140건을 찬양동조, 반정부, 용공, 좌익, 선전선동 등으로 감정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으로 얽어매려는 데 적극 동조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등 공안기관들은 4.15총선이후에도 11건에 이르는 당의 공식자료 등을 감정하여 원내정당이 된 후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과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 공안기구의 불법적인 사찰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 수사는 경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에서도 자행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문건 6건에 대해 감정의뢰하여 정치사찰을 계속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12건의 감정의뢰를 한 것은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이 계속하고 있으며 원내정당에 대한 사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 감정대상과 내용 문제

국가보안법의 위반혐의가 있다며 감정의뢰한 것 중에는 민주노동당 당헌과 당규약, 2001년, 2002년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자료집, 서울시지부와 울산시지부를 비롯한 지구당의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자료집, 대구시지부 후보등록결과가 있습니다.

이라크파병반대 당홍보물과 손배가압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주장한 당특보도 감정의뢰하였으며 심지어 청계천복원문제를 다른 공개토론회의 자료집까지 감정의뢰하였다.

공당의 공식 대회와 공개적인 공식 행사자료집에 찬양고무이적혐의를 씌우려는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의 범망에 얽어매기 위해 공안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의〉

경찰청 보안수사대 등 경찰에서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산하 조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한 것이 몇건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사찰, 수사한 것이 아니고 검토용이다.

•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감정의뢰한 수사행위

- 당의 근간인 당헌과 당규에 대해 반복적으로 감정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당헌과 강령에 대해 무려 14번에 걸쳐 반복해서 감정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대해 용공, 좌익, 반정부, 찬양동조라는 감정결과서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해체되어야하는 불법조직이 된 것입니다. 당 대위원대회와 중앙위원회 회의록도 수차례에 걸쳐 감정하여 용공이니 찬양동조니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공당의 강령과 규약에 대해 집요하게 감정을 했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4년간 280여회에 걸쳐

보안수사대 등에서 공안문제연구소에 문서를 감정의뢰하는 것은 내사와 수사의 일정단계에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280여건 이상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찰과 내사, 수사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사찰이고 수사입니까.

- 민주노동당에만 있는 현상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라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는 한건도 없는 감정의뢰가 민주노동당에만 280건 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러고도 경찰의 공안부서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특별한 의도가 없었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특정부서가 특정대상을 중점적으로 감정의뢰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한 문서대상과 기간을 보면 특정한 기관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여 감정의뢰한 사실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지정보안수사대에서 민주노동당 고대학생위원회의 자료를 2003년 1월 부터 3월까지 9건 감정의뢰하였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대해 2003년 3월 부터 2003년 4월 까지 12건 감정의뢰하였으며

강원지정보안수사대에서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의 자료에 대해 2002년 10월 부터 2003년 10월까지 17건 감정의뢰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특정 부서와 산하조직에 대해 경찰이 명백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찰,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공식문서들을 감정의뢰한 목적과 경위를 밝히고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지방청 보안수사대, 해당경찰서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 자료 입수의 불법성

특히 경찰이 감정의뢰한 자료들을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감정의뢰한 자료들 중에는 민주노동당의 내부분서들도 있습니다.

충남지청 보안수사대가 감정의뢰한 16대 대선토론회 기획회의 회의록, 연세대학생위원회 2003년 사업계획서 등이 그런 예에 속합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중앙당이나 시지부, 지구당 또는 해당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이 자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질의>

이에 대해 경찰청장 답변해 보십시오.

<예상답변> : 자연스럽게 수집한 것을 검토 차원에서...

본 의원은 경찰이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의뢰한 문서 각각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악법성

공안문제연구소는 281건을 감정의뢰받아 66건을 찬양동조로, 35건을 반정부, 20건을 용공, 10건을 좌익으로, 9건을 선전전동으로 감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헌과 당규약을 찬양동조로,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자료집을 찬양동조, 서울시지부 등 각 지구당의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찬양동조, 대구시지부 후보등록결과를 찬양동조로 감정하였습니다.

2002년 당대회자료집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고 북한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는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부패방지법, 이자제한법 제정을 주장했다고 용공 표현물이라고 감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좌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지>케 한다는 이유로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는 등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이 북한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친북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철폐가 북한의 노선을 선전하는 친북용공행위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용공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체제로 이득을 누려온 집단

이 얼마나 편집증적이며 비이성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자의적인 법집행

<질의>

경찰은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찬양동조, 반정부, 용공, 좌익, 선전선동 등으로 전제의 50%인 140건을 감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상답변> :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등등...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적용입니다.

공당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사찰 내사한 것을 3급비밀로 분류해 숨겨두고 법적용은 제마음대로 합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손에서 결정됩니까.

그러면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경찰청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해당 공안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찰은 감정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맺는말 - 책임자처벌과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흔히 국가보안법을 미친개에 비유합니다.

본의원은 그 표현이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을 접하면서 그 비유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친북용공혐의를 씌우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식도 필요없고 합리적인 생각은 죄다 용공, 친북이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법을 누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흉물이며 민주주의의 장점을 갹아먹는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좋은 법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감정서를 써내는 것으로 자리를 보전하고있는 공안문제연구소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만들고 검거하여 포상과 특진을 누리는 공안기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하루빨리 수치스러운 역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안기구를 해체하여 더이상 국가보안법에 빌붙어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경찰청장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감정의뢰한 사실을 포함하여 사찰 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와 관련기관에 대해 명백한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안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공안문제 연구소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 수사를 은밀히 진행해 온 것과 이를 3급비밀로 분류하여 숨겨온 것에 대해 경찰청장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질의시간에 다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보충하겠습니다.

• 공안문제연구소 소장에게 질의

이미 본의원의 질의에서 밝혀졌듯이 공안문제연구소가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용공친북딱지를 붙이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이 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냉전논리에 사로잡힌 수구보수의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체로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의 당헌과 강령에 대해 몇차례에 걸쳐 감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령에 대해서 2000년에 한 감정서에는 <용공>이라고 하고 2003년에는 <찬양동조>라고 감정하였더군요.

민주노동당이 강령이 그새 변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강령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3월에 당헌에 대한 감정때는 <기타>라고 감정하더니 2003년 <찬양동조>로 감정하였더군요.

가치관이 변한겁니까 아니면 앞에 했던 감정을 기억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안좋은 겁니까.

이런 짓이 국가기관의 간판을 걸고 할 짓입니까.

공안문제연구소 소장과 연구원들은 감정서 써내며 편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감정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몇명인줄 압니까?

• 감정결과

기간 : 1998년(전신인 국민승리21) - 2004년 7월

총 감정의뢰건수 : 281

찬양동조 : 66

반 정 부 : 35

용 공 : 20

좌 익 : 10

선전선동 : 9 ----- 이상 140건(50%)

기 타 : 121

문제없다 : 20 ----- 7.1%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나 폐지후 보완 의견은 43.5%

< 9.30 MBC여론조사 >

• 당헌 당규 감정

▶ 강령 7회 감정

1999	강령시안	용공	
1999	창당추진위강령전문	좌익	
1999	강령해설	좌익	
2000	민주노동당강령	용공	
2000	민주노동당(준)강령시안	용공	
2000	민주노동당강령해설	좌익	
2003.3.10	민주노동당의약속-강령요약	찬양동조	경남지청마산동부서

▶ 당규 3회 감정

2000	민주노동당당헌(시안),규약(시안)		반정부
2003.3.10	민주노동당당규	기타	경남지청마산동부서
2003.3.10	당규개정해설안	기타	경남지청마산동부서

▶ 당헌 3회 감정

2000	민주노동당당헌(시안),규약(시안)		반정부
2001.3.12	민주노동당당헌	기타	서울지청남부서
2003.5.1	민주노동당 당헌	찬양동조	충남지청 보안수사2대

〈답변논리 예〉

▶ 사찰, 수사가 아니고 정보 확인, 검토

1. 다른 정당에는 한건도 없는 데 왜 민주노동당에만 200건 넘게 했는가.
2. 특정 시기에 특정 기관에 의해 특정 대상에 집중되어 진행된 것은 의도를 가지고 착수했다는 증거
3. 공개되지않는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감정의뢰한 것은 수사의 본격단계에서나 하는 행위

▶ 민주노동당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 저것 다했다

1. 당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다.
2. 개인인 경우도 원내 진출한 이후에는 없다.
3. 당헌 당규를 감정하여 용공, 좌익으로 한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도전이 분명하다.

▶ 비밀자료

1. 공당에 대한 사찰 수사를 비밀로 분류한 것은 정치사찰을 은폐하려는 것
2.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에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 비밀이나 아

니냐는 것으로 사실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3. 민주노동당은 당사자이므로 비밀여부와 관계없이 문제제기할 권리가 있다.

▶ 하부에서 한 일이다

1. 공당에 대한 수사 사찰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는가.
2. 하부 책임자를 문책하라
3.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라면 경찰청장이 책임져라.

▶ 검토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무것도 안했다.

1. 검토지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2. 검토는 누가 했는가. - 경찰청장, 아니면 공당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 판단을 경찰청장도 모르게 하는가
3.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누가 했는가.
4.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면 동일한 내용을 4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감정의뢰한 이유는 무엇인가.
5. 8월까지 감정의뢰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처우개선요구회피하러 대규모 직권면직

경찰청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의 사유가 직렬변경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공무원의 직제는 사실상 89년 폐지되었지만 경찰청에서는 89년 이후로도 2002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해왔습니다.

98년까지 일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승급하고 2002년에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인력들을 운영함에 있어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이 오랜기간 경찰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역할을 제대로 살려주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하면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것인데 굳이 직권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권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당행위도 발생하였습니다.

충남서산경찰서의 경우 2003년 12월31일 7-8명정도의 고용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대상인 5명을 선정하는 심사를 거치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애엄마는 필요없다. 생생한 애가 필요하다.” 는 말을 들으며 사표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결혼한 또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는 청문감사실에 경찰

관인 남편을 불러 “인사에 지장이 있을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라” 식으로 자진 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일방적인 대규모 직권면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그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데 이것은 인력운영의 비효율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다시금 경찰에서 근무하던 곳에 일용직으로 다시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용직을 면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회피식이 아닌 책임있는 인력운영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찰, 민노당-한청 등 조직감정 시인...과장일듯

[오마이뉴스 2004-10-18 15:35]

최기문 경찰청장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민노당, 한청, 진보의련 등 '조직감정' 시인...과장일듯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청(한국청년단체 협의회) 등에 대해 '조직' 감정한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감정서가 사적인 차원에서 전달되었음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창당 이후 280여 차례 '사찰' 사례가 드러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이미 법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결한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사건에 대해서도 그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오가 넘어 시작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는 개별 문건에 대해서만 이적감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직감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문 경찰청장은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대학 예규에 기록된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에 따르면 공안 관련 사건의 증거물인 '감정문건'은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의뢰한 문서, 출판물 및 증거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안문제연구소측은 "조직·단체에 대한 감정사항

은 없다"고 부인했고 다만 한청, 진보의련은 "수사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해 해당단체와 관련된 감정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향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최 의원측에 밝힌 바 있다.

경찰청장의 이같은 답변이 나가자 당황한 듯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문서, 출판물과 같은 문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증거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추가 답변을 했고, 한청과 진보의련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공식 감정서가 아닌 검토의 견서로 사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광섭 보안국장은 "이 과정에서 추후 잘못된 일이 밝혀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조직감정에 대한 무리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 보안국이 감정의뢰한 한청 사건의 경우 2002년 9월 전 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이 구속된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공안 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현재 한청 사건은 항소 중이다.

의대 교수·의사·간호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 진보의련은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을 통해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진보의련은 1995년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등에 동의하는 의료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01년 조직 해산을 앞둔 상태였지만 경찰은 후원금만 보낸 회원을 비롯해 이미 수년 전 활동을 정리한 회원까지 10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중 8명을 연행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이 과거사위원회를 설치 자체적인 과거사 규명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연구소 '존속' 입장을 보이며 "다만 국가안보 연구 등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존폐와 관련 공안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대학 산하의 치안연구소와 통폐합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수사"라고 전제한 뒤 "노동당에 가입은 하지 않았어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서적을 읽고, 노동당 규약을 교육하는 문서를 실마리로 해서 간첩을 잡을 수 있었다"며 공안문제연구소의 역할론을 내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김근태 장관, 민주노동당, 소설가 황석영을 '용공' 감정 내린 것과 관련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의 많은 간첩 사건에서 법원 판결에 유력한 논거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숙 의원은 최기문 청장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추궁했으나 최 청장은 "국가안보를 고려해 입법기관에서 법안을 마련한다면 집행기관은 그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해 사건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신 : 18일 오후 1시 15분]

정부기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뒤바뀐 모양새다. 관례적으로 여당은 피감기관의 증인채택을 꺼려하고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증인으로 불러 정부의 실정을 들추자는 입장. 하지만 18일 국회 행자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정반대였다.

최근 무차별한 '사상검증'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7일 전 통보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위반을 반대이유로 내세웠고, 열린우리당은 "합의를 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절차를 따진다"며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맞섰다.

특히 창당 이후 280여차례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찰'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민주노동당은 매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수차례 증인요청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 지난 주 서울경찰청 국감 때 구두 합의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공안문제연구소 전

병렬 소장과 가장 오래 재직한 유동렬 연구관. 최 의원은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감정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사상검증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이 증인들이 증언의 의지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는 증인측에 출석 요구서가 7일 전에 송부되어야 한다"며 '법률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유기준 의원은 "오는 20일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공안문제연구소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최규식, 이영순 의원은 정보위에 참석해 질의해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가 빈축을 샀다.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위원회인 정보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했는데 경찰청 주무 위원회인 행자위가 증인채택을 못해 위원들더러 정보위에 가서 하라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라며 "적어도 정보위보다 행자위가 먼저 합의해 다뤘어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기준 "정보위 가서 질의해라" - 유인태 "공안연은 행자위 소관 기관"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속사정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 한 가운데

공안문제연구소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신문들이 일제히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에 대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왜 느닷없이 공안문제연구소를 들고 나오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 문제는 여당의 국보법 폐지당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감정서 발급은 법률의 양심과 전문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정치권이 왜 끼어드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안연구소를 의사에, 국보법 위반자들을 환자에 비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1주, 2주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이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다른 곳도 아니고 행자위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경찰청 산하기관을 하자는 것"이라며 "증인채택 요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범절차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이라고 따졌다.

이같은 공방이 계속되자 이용희 위원장은 11시 30분께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증인심문은 오는 26일 행자위원회를 열어 별도로 진행

하기도 합의했다.

한편 증인채택으로 인해 지연된 경찰청 국정감사는 12시 10
분께 개최되었다.

/박형숙 기자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현장> 행자위 '공안문제연구소' 설전(종합)

[연합뉴스 2004-10-18 15:35]

포토 시장 경제의 왜 떠나

"광복전 김희선의원 부친은
만주국 경찰 特務"

먼저 열린우리당의 최규식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공안문제연구소에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 감정을 의뢰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연구소는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일부 신문의 기사나 방송의 특정프로그램도 연구소에 의해 이적 감정을 받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출판물이 아닌 단체에 대해 의견서가 만들어지는 등 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안 경찰이 담당 사건과 관련된 특진을 위해 연구소에 '좌익·용공'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진단서' 발급은 전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국보법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국보법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며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당론을 간접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여러 간첩사건의 판결에서 유력한 논거를 제시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시정해야겠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

안문제연구소가 객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 했다.

오전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전병용 공안문제연구소장 등의 증인 출석 문제는 오는 26일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민노당과 한국 청년단체협의회 관계자 20여명이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을 들고 시위를 벌 이기도 했다.

ssahn@yonhapnews.co.kr (끝)

최규식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여전"(종합)

[연합뉴스 2004-10-18 15:23]

포토

"광복전 김희선의원 부친은
만주국 경찰 特務"

염동연의원 재산등록때
2억 빼놓고 신고

경찰 조사마친 인천시장

"안 시장 경제인 왜 만나"
vs"단체장 탄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여전히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벌이는 등 '사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최규식(崔奎植.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1년 77건, 2002년 207건, 2003년 276건, 2004년 8월까지 102건 등 총 662 건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주요 감정 사례로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독재정권에 철퇴를 내렸던 학생운동(손석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안계통에 있는 세력들은 생존과 집단 이기주의의 공안 논리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의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을 의뢰하는 서적들은 군에 입대한 안보위해세력들이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고 은밀히 영내에 반입한 서적이거나 동료 병사에게 탐독을 권유한 서적"이라며 "기무사는 군의 이념적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자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무사측은 "기무사에서는 군사법원법 제44조2호에 명시된 수사권에 근거해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경우 군사기 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만 민간 검찰의 지휘하에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ayys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의감기관 : 경찰청

10월18일(월)